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리투아니아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리투아니아 공화국 (The Republic of Lithuania)
면적	65,300 km ²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book)
수도	빌뉴스 (Vilnius)
인구	2,793,039 명 (자료원 : 리투아니아 통계청, 2020. 4. 기준)
민족(인종)	리투아니아인 84.1%, 폴란드인 6.6%, 러시아인 5.8%, 벨라루스인 1.2%, 기타 2.3%
언어	리투아니아어
종교	카톨릭 77.2%, 동방정교 4.1%, 기타 18.7%
기후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교차 (7월 평균기온 17℃ / 1월 평균기온 -4.9℃)
국가원수	대통령 : 기타나스 나우세다 (Gitanas Nauseda) 총 리 : 사울리스 스크베르넬리스 (Saulius Skvernelis)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1-10-14 (자료원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93-11-09	평등, 무차별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확대 시키며 실질적이고 조화로운 무역발전과 다양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희망하고, 경제적 유대관계가 양국간의 관계강화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합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11-09	양국간 경제협력 진전을 희망하고,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일방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타방당사국 영역안에서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를 둔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가 이 분야에서의 기업창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여 합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2002-05-09	양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우호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하여 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007-07-14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합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5-01-2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기를 희망하며 합의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107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공관현황
 - 아국: 주 폴란드 대사관이 겸임 (2011. 3. 겸임국 조정)
 - 아국 공관장: 선미라 대사
 - 리투아니아: 주중국 리투아니아대사관이 겸임
 - 리투아니아 공관장: 이나 마르치올리오네테 대사(2016.11. 신임장 제정)
- 최근 주요인사 교류
 - 91.10. Vagnorius 총리
 - 93. 9. Slezevicius 총리 및 Klimasauskas 상공장관 (대전 EXPO "발틱의 날" 기념행사 참석 계기)
 - 99. 3. Algirdas Saudargas 외교장관 공식 방한
 - 03. 4. 리·한 의원 친선협회 대표단 방한
 - 03. 7. 조부영 국회부의장 방문
 - 04. 7. Gudauskas 총리고문 방한
 - 05. 7. 김학원 한-리 의원 친선협회장 방문
 - 06. 4. Valionis 외교장관 방한
 - 09. 2. 우제창 의원 등 국회의원단 방문
 - 10. 2. Jukneviene 국방장관 방한
 - 11. 7. 박희태 국회의장 방문
 - 12. 3. Grybauskaite 대통령 방한(핵안보정상회의 참석)
 - 12. 6. Masiulis 교통통신장관 방한
 - 14. 2. Grybauskaite 대통령 방한(LNG 수송선 명명식 참석)
 - 14.10. Grauziniene 국회의장 방한

경제

- 우리나라와 리투아니아는 국교 수립 이후 꾸준한 경제 기술 협력을 해오고 있다.
- 양국의 교역량은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리투아니아 경제가 하락세를 그리면서 2007년까지 크게 줄어들었고, 2008~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증가하지 않았다.
- 리투아니아와의 무역수지는 2006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폭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3년 1억 달러 흑자를 돌파한 이후, 2019년에는 약 2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문화

- 한국어 강의: 1994~2000년 빌니우스 대학에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사례가 있으나 재정 문제로 현재 중단

- 양국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2006.10. 9~11. 간 우리나라 전통공연단의 리투아니아 방문 공연
- 2011.11.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전통공연단 공연
- 2014. 9. 로메리스 국립대학 내 세종학당 개설
- 2016. 5.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전통공연단 공연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2.56	4.25	3.64	3.93	-
명목GDP (십억\$)	43.02	47.63	53.43	-	-
1인당 GDP (PPP, \$)	30,334	33,315	35,461	-	-
1인당 명목 GDP (\$)	14,999	16,841	19,153	-	-
정부부채 (% of GDP)	39.9	39.4	34.2	32	-
물가상승률 (%)	0.68	3.72	2.53	2.24	-
실업률 (%)	7.86	7.07	6.15	6.3	-
수출액 (백만\$)	25,009.34	29,923.05	33,336.91	33,124.35	2,496.26
수입액 (백만\$)	27,333.16	32,541.52	36,501.93	35,612.69	2,642.5
무역수지 (백만\$)	-2,323.82	-2,618.47	-3,165.02	-2,488.34	-146.24
외환 보유고 (백만\$)	2,394.38	4,216.55	5,540.39	4,809.29	4,247.01
이자율 (%)	0.31	0.31	0.31	0.31	-
환율 (자국통화)	-	-	-	-	-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 리투아니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유로존의 19번째 회원국으로 편입됐다.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에도 11년간 사용해온 자국 화폐 리타스 대신 EU의 통화동맹 체제에 들어온 것이다. 이로써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등 과거 러시아 영향권 아래 놓여있던 발트 해 3국이 모두 유로존으로 들어가게 됐다.

○ CIA의 World Factbook의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GDP는 농업 3.5%, 제조업 29.4%, 서비스업 67.2%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산업은 섬유, 직물, 화학, 목재, 가구 등이며, 최근에는 레이저, 핀테크, 생명공학, I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경제 전망

◦ 2011년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리투아니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4%의 꾸준한 GDP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8.1%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4.8%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3,371,118,603
2	라트비아	2,470,355,270
3	폴란드	2,278,247,766
4	독일	1,921,849,677
5	에스토니아	1,325,878,933
6	미국	1,286,070,145
7	스웨덴	1,188,476,558
8	영국	1,063,901,492
9	벨라루스	962,976,596
10	네덜란드	783,461,75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4,449,006,574
2	라트비아	2,809,566,821
3	폴란드	2,364,155,492
4	독일	2,124,885,643
5	미국	1,550,585,367
6	에스토니아	1,411,829,803
7	스웨덴	1,405,747,271
8	벨라루스	1,136,018,177
9	네덜란드	1,027,041,875

10	영국	1,025,775,436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4,665,591,137
2	라트비아	3,267,453,609
3	폴란드	2,749,510,012
4	독일	2,460,238,358
5	미국	1,675,452,328
6	에스토니아	1,639,108,482
7	스웨덴	1,615,173,161
8	영국	1,272,812,754
9	벨라루스	1,271,305,780
10	네덜란드	1,121,866,06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4,632,671,816
2	라트비아	3,165,053,728
3	폴란드	2,633,898,741
4	독일	2,575,630,727
5	에스토니아	1,697,578,361
6	스웨덴	1,498,964,762
7	벨라루스	1,282,895,785
8	네덜란드	1,281,970,393
9	영국	1,279,866,574
10	미국	1,240,256,861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3,793,242,752
2	독일	3,354,418,494
3	폴란드	3,013,975,333
4	라트비아	2,200,677,976
5	이탈리아	1,494,957,205
6	네덜란드	1,328,078,010
7	스웨덴	1,180,045,124
8	프랑스	937,341,292
9	에스토니아	916,720,172
10	벨기에	868,514,35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4,059,444,334
2	독일	3,743,606,229
3	폴란드	3,182,748,109
4	라트비아	2,185,963,426
5	이탈리아	1,596,313,026
6	네덜란드	1,551,223,730
7	스웨덴	1,203,644,727
8	프랑스	1,173,893,251
9	벨기에	1,015,573,915
10	카자흐스탄	1,009,777,49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5,172,731,877
2	독일	4,371,636,239
3	폴란드	4,203,085,668
4	라트비아	2,612,841,613

5	네덜란드	1,801,409,765
6	이탈리아	1,780,829,404
7	스웨덴	1,369,241,323
8	프랑스	1,234,115,859
9	벨기에	1,168,989,031
10	에스토니아	1,119,950,20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	5,347,947,151
2	폴란드	4,224,394,689
3	독일	4,205,709,127
4	라트비아	2,546,246,891
5	네덜란드	1,962,495,387
6	이탈리아	1,779,581,154
7	스웨덴	1,347,423,601
8	에스토니아	1,228,200,852
9	프랑스	1,174,132,603
10	중화인민공화국	1,039,963,804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022,355,447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46,006,621
3	100199	기타	565,309,037
4	300490	기타	536,836,115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14,540,900

6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502,790,541
7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37,513,265
8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423,478
9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314,642,988
10	940390	부분품	304,575,33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271,359,484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643,404,306
3	100199	기타	579,047,408
4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39,729,515
5	300490	기타	538,144,111
6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524,494,151
7	940390	부분품	369,962,493
8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324,155,656
9	0305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314,239,898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06,868,54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267,549,813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722,367,964
3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50,432,239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30,193,271
5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587,933,587
6	300490	기타	538,149,955

7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3002호 ·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47,179,773
8	940390	부분품	405,538,813
9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373,736,913
10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371,421,13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023,029,339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38,612,029
3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732,408,992
4	100199	기타	659,252,812
5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638,677,619
6	390761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581,627,135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39,908,821
8	300490	기타	533,669,491
9	940390	부분품	427,137,640
10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3002호 ·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9,241,40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11,593,893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88,716,642
3	271019	기타	794,955,775
4	300490	기타	763,184,373

5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69,360,962
6	271600	전기에너지	394,664,469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70,544,766
8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315,111,589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81,523,128
10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74,667,264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887,804,170
2	300490	기타	783,450,148
3	271019	기타	557,927,248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36,141,233
5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94,741,057
6	271600	전기에너지	424,556,343
7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341,729,149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18,687,706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07,715,897
10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96,768,51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898,313,326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74,506,383
3	300490	기타	813,638,984
4	271600	전기에너지	714,366,771

5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652,060,696
6	271019	기타	500,346,79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89,175,807
8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66,578,369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83,373,308
10	271121	천연가스	383,235,49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409,898,535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78,798,577
3	300490	기타	879,729,475
4	271600	전기에너지	710,688,381
5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523,529,035
6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64,654,102
7	271019	기타	463,146,663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27,540,812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14,343,573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396,771,132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308	70	238
2017	310	80	230
2018	306	80	226
2019	344	75	269
2020	176	54	1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231	0	230
2	2140	합성수지	13	0	13
3	8352	축전기	2	0	2
4	7420	자동차부품	11	0	11
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4	0	4
6	5151	문구	1	0	0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	0	0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	0	4
9	4111	폴리에스테르섬유	4	0	4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2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107	0	107
2	2140	합성수지	7	0	7
3	8352	축전지	5	0	5
4	7420	자동차부품	4	0	4
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	0	3
6	5151	문구	3	0	3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	0	2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	1	1
9	4111	폴리에스테르섬유	2	0	2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2	0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312	제재목	0	13	-13
2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	6	-6
3	0243	낙농품	0	3	-4
4	7151	광학기기	0	6	-6
5	4412	직물제의류	0	3	-4
6	7512	밸브	0	4	-4
7	5129	기타가구	0	3	-3
8	4224	아세테이트사	0	2	-3
9	0154	연초류	0	4	-4
10	0169	기타농산가공품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312	제재목	0	8	-8
2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	8	-6
3	0243	낙농품	0	4	-4
4	7151	광학기기	0	3	-3

5	4412	식물제의류	0	3	-3
6	7512	밸브	0	2	-2
7	5129	기타가구	0	2	-2
8	4224	아세테이트사	0	1	-1
9	0154	연초류	0	1	-1
10	0169	기타농산가공품	0	1	-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 3. 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 4.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QD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1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 (2013. 8. 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2013.10. 1.) 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 8. 1.), 페루 (2013. 3. 1.), 에콰도르 (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2018. 2. 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을 대체
Stepping ston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비준 진행 중(2020년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양측 체결 합의(2019. 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6.10.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2019. 6.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3년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 4. 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2000.10. 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19. 7.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협상: 2019. 5.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협상 개시일: 2013.11.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2017. 2.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 부분 현대화 추진 중, 직전협상: 2019. 7.	기존 협정 발효일: 2005. 3. 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1998. 3. 1.

〈자료원 : EU 집행위〉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4809.90, 4811.59, 4811.90,	중량 감열지 (Heavy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조사중)	2019-10-10
2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3-26
3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4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5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6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7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기술장벽)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자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인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 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CPNP 인증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OTRA 뉴스를 참고할 수 있겠다.

- CPNP 정보 링크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9902>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올해 9월 23일까지 수렴한 후 2021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이번 발표된 제도가 내년 법제화 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포된 후로 지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7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 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어 왔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왔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의 경우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리투아니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에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속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의거해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15일부로 구축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4월 3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의료물자 관세면제를 통해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목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 품목이 면제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1월 30일 ~ 2020년 7월 31일 기간 중 수입된 품목에 적용되며, EU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발발을 비상사태로 선포한 1월 30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 그간 수입의료품에 대해 평균 1.5%의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역내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절차 (Standard Import Entry)

- 물품 도착 전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의무 (ENS, 도착신고서)
 - 2011년 1월 1일부터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EU에서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Import Control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 운송수단에 따라 ENS 제출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해상운송일 경우, 일반 물품은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 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일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육상 운송의 경우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에는,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의 EORI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도 요구된다.
- 세관 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 (Arrival Notice)
 - 사전신고 된 내역을 검토한 후 세관 당국에서는 물품 도착 허가를 통지하지만,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 수입신고 (세관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모든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비역내산 물품은,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 통관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구비서류로는 관세청 소정 양식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필요 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카탈로그, 검역증명서, 식물 병리학 증명서(식물, 과일), CITES증명서(야생동물 및 식물) 등이 있다. 해당 EU 국가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 세관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및 검사가 가능하며,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 급수요물자 등의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물품에 필요한 EU 인증 등을 구비했는지도 검사하게 된다.
-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 관세는 유럽 통합이며, 부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 리투아니아의 경우 21%이다.
 - 최종 목적지가 리투아니아가 아닌 EU 내 다른 국가일 경우,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관세는 즉시 납부할지라도, 부가세(VAT)는 목적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된다.

2) 약식통관 (Simplified Import Entry)

-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관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Usms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간이신고방식은 정식 제출서류를 면제하거나 기타 공용 또는 상용서류로 대행하는 것으로, 기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물품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자사의 사업장으로 직접 반입, 자신의 장부에 기재 후 세관에 추후 통보하여도 통관 신고서 제출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 신고인은 일반적, 주기적 성격의 사후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충신고서는 간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단일 불가분의 문서로 간주된다.

3) 샘플/전시물건 통관 (Sample Import Entry)

- 샘플이나 전시물건의 통관은 별도의 운영제도가 있지는 않으나, 인보이스와 팩킹박스에 “Sample” 혹은 “no commercial value”를 반드시 기재해야 VAT 면제 혜택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인보이스상 가격도 1달러 이상 60달러 미만의 액수를 기입해야 한다. 가격을 0달러로 기입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아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기 쉽다. 하지만, 인보이스에 “Sample” 혹은 “no commercial value”로 기입하고 가격 60 미만으로 잘 기재를 했어도 통관 시 VAT 면제 대상이 되느냐는 운이 많이 작용한다. 소량 팩킹의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배송되나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물건의 경우는 세관에 가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전시물건이라 할지라도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통관에 문제가 없다.

통관 시 유의사항

- 물품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명칭일수록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한 내 사전전자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적하목록 허위제출을 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이 있다.
- 대부분의 수입상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회사대표 부재 시에는 대표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요구해 통관이 지연된 때도 있으므로 통관담당자에게 일정한 유효기간을 지닌 위임장을 발급해야 할 것이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무관세 품목임에도 원산지 증명 및 기타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관세납부를 할 경우가 있으며, 서류에 기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발견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과 서류의 일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 (CN CODE)가 적용된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단위 통합관세 분류번호(TARIC Code)가 적용될 수 있다. TARI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2자리 코드를 추가 부여한 체계이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납부 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도록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Ramitrans, UAB

주소	M. K. iurlionio g. 84B-54, LT-03100 Vilnius
전화번호	+370 6 501 0088

이메일	sales@ramitrans.lt
홈페이지	http://www.ramitrans.lt

◦ Ingstad &Co, UAB

주소	Eiguli g. 21, LT-03150 Vilnius
전화번호	+370 5 213 6834
이메일	info@ingstad.lt
홈페이지	http://www.ingstad.lt

◦ Didneriai, UAB

주소	V. A. Graiino g. 38, LT-02241 Vilnius
전화번호	+370 5 260 2773
이메일	didneriai@didneriai.lt
홈페이지	http://www.didneriai.lt

◦ DLG, UAB

주소	Perknkiemio g. 5, LT-12129 Vilnius
전화번호	+370 5 232 0000
이메일	info@dlg.lt
홈페이지	https://www.dlg.lt

◦ Kauno logistikos agentra, UAB

주소	Taikos pr. 90, LT-51181 Kaunas
전화번호	+370 3 745 4255
이메일	info@kla.lt
홈페이지	https://www.kla.lt/en

◦ TIROLA, UAB

주소	algirio g. 112A, LT-09300 Vilnius
전화번호	+370 5 276 6016
이메일	info@tirola.lt

홈페이지	http://www.tirola.lt
------	---

◦ Hres, UAB

주소	Liepkalnio g. 122, LT-02121 Vilnius
전화번호	+370 5 239 5481
이메일	myynti@hrx.fi
홈페이지	https://www.hrx.fi/en/lt

◦ Sidabrinis voras, UAB

주소	Dvaro g. 162B, LT-76197 iauliai
전화번호	+370 6 114 4735
이메일	antanas@vorastransport.eu
홈페이지	https://sidabrinisvoras.lt

◦ Essential Logistics, UAB

주소	Savanori pr. 180B-101, LT-03154 Vilnius
전화번호	+370 6 575 3038
이메일	info@essentiallogistics.lt
홈페이지	http://essentiallogistics.lt

◦ Aurida Logistics Solutions, UAB

주소	Pramons g. 8, LT-35100 Panevys
전화번호	+370 6 610 8888
이메일	info@aurida-logistics.lt
홈페이지	https://www.aurida-logistics.lt

<자료원 : <https://www.vz.lt/>>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경제활동법
 - 동등한 대우에 관한 조항: 외국인 투자자는 리투아니아 국민과 동등한 사업 조건을 가진다.
 - 동등한 보호에 관한 조항: 외국인투자자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리투아니아 국민과 동등하게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 경제 분야에 관한 동등한 접근에 관한 조항: 외국인 투자자는 리투아니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리투아니아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예: 국가 국방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 경제활동 제약).

투자인센티브

- R&D 투자 관련 혜택
 - 리투아니아 국립 감사원은 2013년 2014~2020년 R&D 부문에 약 6억 7천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6~2013년 기간대비 2억 6천만 유로 증가한 수치이며 향후 R&D 정부 지출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리투아니아에서 R&D 투자를 진행할 경우 R&D 비용은 최대 3회까지 공제되며 법인세는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R&D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정부의 세금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프로젝트 내용 및 R&D 활동비용을 신청서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연구비 상환 혜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Smart FDI 혜택
 - 리투아니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연구 및 시제품 개발에 지출되는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 혜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기업 규모별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대기업 최대 50%, 중기업 최대 60%, 소기업 최대 70%, 기업 간 협업 최대 15%
 - 시제품 개발: 대기업 최대 25%, 중기업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 기업 간 협업 최대 15%
 - HR 트레이닝: 리투아니아에 투자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 기업들은 직원 트레이닝에 지출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상환받을 수 있다.
 - 교육: 대기업 최대 50%, 중기업 최대 60%, 소기업 최대 70%, 극소기업 최대 70%

제한 및 금지(업종)

- 리투아니아에서 관광업, 식품 제조업, 건설업, 주류나 담배 제조, 의약품 제조, 석유 관련 산업, 화물 운송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리투아니아는 카우나스(Kaunas), 클라이페다(Klaipda), 케다이니아이(Kdainiai), 마리얌폴레(Marijampol), 파네베지스(Panevys) 및 샤룰라이(iauliai) 총 7개 도시에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 FEZ)을 지정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세금 감면 혜택

- 법인 소득세: 첫 10년간 면제, 다음 6년간 7.5% 세율 유지
- 배당세 및 부동산세: 면제

산업단지

○ 빌뉴스 산업기술단지

규모	24ha
위치	빌뉴스 (Vilnius)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명칭: Vilnius City Innovation Industrial Park ○ 주소: Vismaliuku street 34, LT-10-243, Vilnius, Lithuania ○ 전화: +370 5 274 5407 ○ 이메일: info@smtp.lt

○ 클라이페다 과학기술단지

규모	1ha
위치	클라이페다 (Klaipda)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명칭: Klaipd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주소: Vilhelmo Berbomo srt. 10, LT-92221 Klaipda ○ 전화: +370 4 631 0461 ○ 이메일: info@kmtpt.lt

〈자료원 : 리투아니아 투자청〉

주요 지역별 여건

○ 빌뉴스

- 위치: 리투아니아 동남쪽 소재
- 특징: 과학 기술, IT, 핀테크

○ 클라이페다

- 위치: 라투아니아 서쪽 소재
- 특징: 선박 및 철강산업, 화학 및 플라스틱, 식음료 및 담배, 목재 가공 및 담배 생산업체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1,053.91	436.43	1,029.62	1,093.58	975.2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369.06	51.38	68.56	671.87	153.35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	1	45	1	45
2019	7	3	638	8	554
2020	0	0	0	1	8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45	1	4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2	636	7	552
도매 및 소매업	1	1	2	1	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0	0	0	1	8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K Technology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UAB
업종	조명생산

<자료원 : https://rekvizitai.vz.lt/en/company/lk_technology/>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리투아니아 회사 유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법적, 경제적 조건을 잘 고려하여 진출형태를 확정해야 한다. 리투아니아에서의 대표적인 투자진출형태는 다음과 같다.

- 유한책임회사(uzdariji akcine bendrove-UAB)
- 주식회사(akcine bendrove-AB)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또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해외지사(branch)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법인 설립 절차

- 정부 등록 센터(Centre of Registers)에 등록절차신청
- 설립자본금이 납입될 법인계좌 개설
- 정부 등록 센터 내 산업등기부(Trade Register)에 주주 및 대표자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문서 기입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등록
- 등기부(Trade Register)에서 발급된 리투아니아 등기부 등본 및 허가증 수령

지사

○ 외국회사의 지사는 회사의 구조 단위로서 고유의 등록 사무실을 가지며, 독립체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지사는 독립체의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법인 등기부에 등기해야 한다.

○ 외국회사는 지사의 의무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지사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외국회사가 허용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무수행)을 진다.

○ 지사 설립인이 EEA(European Economic Area)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사를 대리하는 개인 중 최소한 한 명(예를 들어, 지사 관리자)은 리투아니아에 거주해야 한다.

○ 지사 설립 절차

- 지사계좌 개설
- 현지 대표자 등록
- 정부 등록 센터 (Centre of Register)에 등록절차신청

○ 지사 설립 관련 주요 서류

- 외국회사 이름 및 등록 주소
- 외국 소재지 증명
- 모기업 이사회 임원진에 대한 세부 정보
- 지사 설립 관련 의결서
- 현지 대표자 등록 증명 서류(현지 대표자 세부 정보 및 권한, 현지 대표자 여권사본, 지사 주소 등)
- 등록 증명서, 재단 증서 및 지사 개설 결정을 증명하는 회의록(공증 필요)

연락사무소

- 외국 회사는 대리 및 판촉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며 대표 사무소는 제한적인 영업활동만을 수행한다.
- 연락사무소가 수행한 활동들이 국내 사업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활동은 리투아니아에서 기업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 연락사무소 설립인이 EEA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연락사무소를 대리하는 개인 중 최소한 한 명은 리투아니아에 거주해야 한다.
- 설립 절차
 - 정부 등록 센터 내 산업등기부(Trade Register)에 결의안 제출
 - 사업장 주소 등록
 - 현지 대표자 등록
 - 산업등기부(Trade Register)로부터 승인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주식회사(akcine bendrove-AB)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투자방법으로, 최소설립자본은 40,000유로이다.
- 최소설립자본은 은행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AB의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공개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
- UAB는 하나의 법적 실체로 간주되며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AB의 법인설립 및 운영은 리투아니아 민법 및 특수 회사법의 규제를 받는다.
- AB는 최소 3명의 임원진 또는 3~15명의 감독기구(Supervisory Council)이 필요하다.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 법인 설립 요건
 - 최소 수권(주식) 자본금(authorized share capital)은 UAB의 경우 2,500유로이고, AB의 경우 4,000유로 수권(주식) 자본금의 4분의 1은 반드시 현금출자. 금전적 분담금은 UAB의 경우 최소 금액인 2,500유로 이상, AB의 경우 40,000유로 이상, 나머지 분담금은 금전적 분담금이거나 현물 출자 가능(현물 출자의 가치는 회사의 등기 이전에 공증받은 자산 평가사의 평가)
 - 주식 자본은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적어도 3분의 2의 결정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할 수 있고,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출하기 위한 목적의 수권(주식) 자본의 축소는 연례 주주총회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 회사의 순자산(equity)은 수권(주식) 자본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uzdariji akcine bendrove-UAB)는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이고 소규모 기업에 이상적이다. UAB 설립을 위한 최소설립자본은 2,500유로이며 은행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UAB의 주식은 공개 유통 또는 거래될 수 없다.
- UAB는 하나의 법적 실체로 간주하며 회사 및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주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진다.

- UAB의 경영진은 주주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는 설립되지 않는다. UAB 최대 주주 수는 2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한편 회전율이 14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연간 감사가 요구된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individuali mon - l)는 한 명의 자연인(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형태로, 법적 책임자인 개인은 기업에 대하여 제한 없는 민사 책임을 가지게 된다.
- 소유자의 자산과 기업 자산은 따로 분리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
- 개인 사업자 유형은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 배우자 혹은 여러 공동소유자에 의해 소유될 수 있다.
- 개인 사업자 설립은 리투아니아 민법과 개인사업자 법에 따라 규제된다.
- 개인사업제는 법률에 따라 최소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 및 스타트업에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이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Glimstedt

전화번호	+370 52 690 700
주소	Jogailos str. 4, Vilnius, Lithuania
홈페이지	https://www.glimstedt.lt/en
이메일	vilnius@glimstedt.l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Suliia & Partners

전화번호	+370 52 055 116
주소	Jogailos str. 4, Vilnius 01116, Lithuania
홈페이지	https://www.sulijapartners.com/en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자료원 : <https://www.companyformationlithuania.com/open-a-liaison-office-in-lithuania>>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 청산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 연간 재무제표, 세금 연체 현황, 기존 사업 계약 진행상황, 관련 업체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청산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며, 특히 회사 전체 또는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청산을 선고하는 날부터 회사의 재산은 법정 관리인이 운영하게 되며 채무자는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게 된다.

◦ 리투아니아 투자기업 청산 절차

1) 준비과정

- 청산결의서 주주총회 및 청산대리인 선임
- 청산 보고서 작성
- 청산 공고
- 세무조사
- 고용계약해지

2) 추후 과정

- 부가가치세(VAT) 등록 말소
- 청산 기간 내에 발생된(발행된) 청산 관련 세금 신고서 제출
- 미납채권 완납
- 회사 운영 종료 일자까지 운영 기간 내에 발생된 세금 신고서 제출
- 자산 양도 계약 하에 관련 회사 자산 양도 및 처분
- 은행계좌 폐쇄
- 회사 운영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
- 회사 직인 폐기
- 관할 지방 자치 당국으로 회사 중요서류(예: 재무자료, 인사기록 등) 보관
- 청산완료
- 해당 법원에 법인 등기말소 신청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USD=0.90EUR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77
비고	○ 2019년 4월 기준 평균 월급 1358.60EUR ○ 2020년 최저임금 607EUR(월급), 3.39EUR(시급)				

〈자료원 : 리투아니아 통계청, 2020.4월 기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고용주가 리투아니아에 소재하고 있고 근무 장소가 리투아니아인 경우 고용계약의 준거법은 리투아니아 노동법전(Then Labour Code)이다. 만 16세 이상부터 노동법전에 의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근무장소, 수행할 업무의 내용, 지위 및 보수를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법전, 기타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률에 제시된 표준안을 따라야 하나, 만일 구두로 체결 후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 고용계약의 종류는 무기계약(정규직)과 유계약(비정규직)을 들 수 있다. 노동법전은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이 영속적인 경우에는 유계약으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단,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예외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유계약은 특정한 기한을 정하거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계절별 단기 근로계약(seasonal contract)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이 기후와 계절에 좌우되는 것이어야 하며, 연속되는 12개월 중 8개월의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임시근로계약(temporary contract)은 경우에는 2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근로계약의 기한이 만료됐지만 실제로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 당사자 중 누구도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는 이 계약은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3개월의 기간 중 근로자가 부재중이었던 기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수습기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기간
- 근로자 자신이 업무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청하는 수습기간

○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를 채용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유형의 수습기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

○ 만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최소 3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일 두 번째 유형의 수습기간일 경우 판단의 재량은 근로자에게 달려있다. 만일 근로자가 수습기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원칙들을 따른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노동법의 모든 적용을 받는다.

근로시간

○ 리투아니아에서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하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 외 근로시간을 포함한 주간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적용하는 기준기간 내에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시간 외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인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비상수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시간 외 근로시간은 단체협약, 사용자의 근로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각 근로자당 하루에 8시간(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12시간), 1주에 48시간(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60시간), 1년에 1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휴가

- 연차 유급휴가
 - 모든 근로자는 매년 최소 다음과 같은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0일 : 근로자가 일주일에 5일 근무할 경우
 - 24일 : 근로자가 일주일에 6일 이상 근무할 경우
- 병가 휴가
 - 직원이 질병으로 병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 2일까지는 고용주에 의해 급여의 80%가 지급되며, 이후에는 리투아니아 사회보험공단(State Social Insurance Fund)에 의해 80%까지 지급된다.
- 출산휴가
 -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여성 직원은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리투아니아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 일반적으로 남성 직원은 출산 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3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리투아니아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 육아휴직(무급휴직)
 -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36개월의 육아휴직권을 가질 수 있으며 연속적 혹은 기간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이 육아휴직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14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고

○ 고용계약의 해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따라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 해고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종료

- 근로자는 무기 또는 유기계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5일 전 고용주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 무기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만일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또는 고용주가 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다.

2) 고용주의 요구에 의한 종료

- 노동법전 제12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서면의 사전 통지를 거친 후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전에 통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노동법전 제136조 제3항).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실이라 함은 업무 수행의 태만, 기타 규칙의 위반 등을 일컫는다. 과실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차별(성, 인종, 언어, 시민권, 사회 계급 등)에 의해 해고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업무 수행능력이나 근로자의 품행 등으로 인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퇴직금

o 고용주가 과실이 없는 근로자를 사전 통지 후 해고할 때에는, 2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했을 경우, 0.5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 근속연수가 5년을 초과한 경우 국가기금인 정규직 고용기금(Long-Term Employee Benefit Fund)으로부터 추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5~10년: 1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
- 근속연수 10~20년: 2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
- 근속연수 20년 초과: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의무가입, 임금의 6.98% 근로자 납부

고용보험

실업보험에 해당, 의무가입, 임금의 1.31% 고용주 납부(계약직의 경우 임금의 2.03%)

산재보험

의무가입, 임금의 0.14~1.40% 고용주 납부

국민연금

의무가입, 임금의 6.98% 근로자 납부

질병보험

임금의 2.09% 근로자 납부

출산보험

임금의 1.71% 근로자 납부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 6개월 넘게 활동을 수행하고 보통 상업적 활동의 온전한 주기가 있다면, 그 외국 회사는 리투아니아에서 고정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국내 기업 및 외국법인의 법인소득세는 1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 및 농업 관련 분야의 기업에게는 5%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 과세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자는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여기서 리투아니아 거주자란 리투아니아에 영구거주지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리투아니아에서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리투아니아 영주권자
- 개인, 사회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입장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개인
- 납세연도 중 183일을 리투아니아에 체류한 개인
- 2년 동안 리투아니아에서의 체류일이 최소 90일 이상인 개인
- 리투아니아 정부에 의해 해외에 파견된 리투아니아 시민

◦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20 또는 27% : 근로자의 봉급, 경영진 임금, 상여 및 성과급은 20%의 개인소득세율이 부과되며,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1.2배 이상을 초과할 경우(2019년 기준 14만 유로)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27%의 개인소득세율이 부과된다.
- 15 또는 20% : 배당금, 자영업자 영업소득, 사회 보장금(질병 수당 등)의 경우 15%의 개인소득세율이 부과되며, 그 금액이 평균 임금의 1.2배 이상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기준 14만 유로)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2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 리투아니아 세금법에 따라 납세자의 특정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면세되거나 공제된다. 면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 생명보험 및 소정 생명 보험 급부금을 받았을 경우
- 특정 유형의 연금 및 500 EUR 이하의 이자를 수령했을 경우
- 선박에서 작업하는 선원의 소득
- VAT 납세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개인의 농업소득
-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 질병 수당, 출산수당 등을 제외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 리투아니아 또는 EEA 회원국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동산으로서, 해당 동산이 3년 전에 취득된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소득
- 리투아니아 또는 EEA 회원국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부동산으로서, 해당 동산이 10년 전에 취득된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소득

부가가치세

◦ 현재 리투아니아의 규정은 2006/112/EC에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U 가입 후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intra-community) 공급 및 인수로 대체됐다.

◦ 부가세(VAT, Tax on goods and services)는 물품과 서비스조달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고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생해 최종 단계까지(소비 용품일 경우 소비자가 최종부가가치세를 지불함)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 법인은 연간 매출이 4만 5천 유로이며 외국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부가세 대상 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부가세 기본 세율은 21%이며, 이 세율이 물품 대부분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단,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율이 인하되어(reduced VAT rate) 과세되며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 : 기본세율, 대부분 품목에 적용
 - 9% : 도서 출판업, 잡지, 신문과 같은 기간제 출판업, 주택 대상 열, 온수 공급서비스, 수화물 배송서비스, 숙박업(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 5% : 장애인을 위한 기술지원, 의료보험법에 따라 구매비용을 환급받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의약품 및 의료
 - 0% : EU 역내 물품 공급, 선박, 항공기 관련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상품교역을 위한 운동,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 수출 기업은 수출 통관 후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

○ 리투아니아의 외국 법인 소득은 리투아니아 원천 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 10% : 유가증권을 포함한 채무에 대한 이자(후순위대출 및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된다.), 기업의 로열티, 저작권 또는 인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
- 15% : 리투아니아에 소재 부동산의 판매, 이전 또는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 이자,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개인의 로열티, 저작권 또는 인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
- 0% : 유럽위원회(EC)의 이자 및 로열티 지침 사항에 부합하는 특수관계자(2년 이하의 협정관계의 경우), EEA 등록 법인, 국제 금융 시장에서 발행된 정부 증권, 감가상각누계액, 예금이자 및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기준에 충족되는 후순위 대출금

○ 2019년 1월 1일부로, 기존에 15%의 원천징수 세율이 부과되던 개인에게 지급된 이자는 원천징수세가 아닌 개인소득세(PIT)에 부과되며 15/20% 세율을 따른다.

○ 2006년 한국-리투아니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 배당 :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총액의 5%,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조세조약 제10조)
- 이자 :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쪽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리투아니아은행 등)이 취득하는 이자는 어느 한 쪽 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조세조약 제11조)
- 사용료(로열티, 저작권 및 인접권) :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5%, 그 밖의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조세조약 제12조)

부동산세

○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 자산은 부동산세가 부과되나 차고, 농장과 같은 유사 부동산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동산세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외국 법인 혹은 단체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내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과세 대상이 된다.

○ 부동산세의 세율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따라 0.3%~3%까지 차등 과세되며 납세자들은 익년도 2월 1일 전까지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법인일 경우 과세액의 1/4을 선납할 수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6월 1일에 다음 해에 적용되는 세율을 발표하

고 있다.

토지세

- 토지세는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납부되나 토지자산이 산림, 공용 도로, 대사관 부지일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결정되며, 토지 가치에 따라 0.01%부터 최대 4%까지 적용할 수 있다.
- 과세액은 5년마다 변경된다. 리투아니아에서 토지를 획득했을 경우 획득 시기에 따라 토지세 납부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상반기 중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당해에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에 취득했을 경우 다음해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 연도는 연 1회이며 토지세 신고서는 매년 11월 1일까지 국가 세무조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 리투아니아는 2014년까지 자국화폐 리타스(Litas)를 사용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리투아니아는 EU 가입 이후 대부분의 경제규제 시스템을 EU 기준에 맞추고 있으며, 외화거래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

외환 규제

- 리투아니아는 기업 및 개인의 외환 계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 보유에 제한이 없으며, 리투아니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
 - 다만 리투아니아 기업이 타국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경우, 리투아니아 중앙은행(the Bank of Lithuania)에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가져야 한다.
- 발틱 국가 내에서 외환 송금에는 규제가 없으나, 1만 유로 또는 1만 유로 상당의 외환을 직접 반입할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발틱 국가 외 다른 나라로 송금할 경우 법률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송금 가능하며 송금에는 따로 규제가 없다. 또한, 세금 납부 상황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리투아니아는 약 279만 명의 인구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1인당 GDP는 19,153달러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가 위축 가능 요인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GDP 성장과 함께 2023년까지 소비 강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Retailing in lithuania>

소비 성향

- 가격이 저렴한 제품뿐만 아니라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류, 신발, 전자기기, 건강 및 뷰티 제품 등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용품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테리어 제품 및 가드닝 제품에 대한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LG, 삼성, 현대, 기아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덕분에 한국산 제품은 첨단기술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19년 리투아니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센터인 Telecentras가 LG전자와 스마트 TV 도입을 위한 상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에도 한국산 제품의 판매 증가와 함께 인지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 수출입 관행
 -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리투아니아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식품, 의약품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EU 가입에 따라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리투아니아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상담 날짜를 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좋다. 시간약속을 신뢰감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시 여겨 미팅에는 정시 혹은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으며,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입맞춤 인사를 하지 않고 악수를 한 후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투아니아어로 인사말을 나누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 할 수 있다.
 - Labas rytas(라바스 리타스): 안녕하세요(오전)
 - Gera popiet(게라 포피에테): 안녕하세요(오후)
 - Malonu(마로누): 만나서 반갑습니다.
 - Labai ai(라바이 아췌): 감사합니다.
- 리투아니아 바이어는 신뢰와 존중을 중요시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할 때는 바이어를 고객으로서 존중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적정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파트너와의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여 직접 만나는 방식의 미팅을 선호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상담 전후 가볍게 한담을 나누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화제로 할 수 있으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리투아니아인들은 나라와 자국민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리투아니아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농구에 대해 애착이 많아 특정 팀이나 국가 팀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생활을 중요시 여겨,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미팅 시, 바이어와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를 앞에 두고 동료와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은 실례이므로 삼가야 한다. 모든 바이어를 똑같이 존중해야 하며, 직원 수가 적다는 등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 리투아니아에서는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상담 전 참석자목록과 직급, 업무분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첨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우리나라와 같이 공원, 광장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카페, 레스토랑 및 대중교통에서의 흡연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사증면제협정
 - 한국은 리투아니아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리투아니아 내에 체류할 수 있다.
 - 단, 사증면제협정은 취업 또는 재화를 벌기 위한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체류 및 취업비자
 - 기간 : 체류목적 및 조건에 따라 상이
 - 체류비자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유효한 여권, 최근 사진, 보험증명서(5792,40 Eur, 영문으로 표기), 재정증명서(리투아니아 내에서 생활비용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학생 또는 교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영문, 아포스티유 필요), 기타
 - * 한국에서 발급해오지 않은 경우,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유효한 여권, 최근 사진, 경력증명서, 노동허가서, 고용계약서, 재정증명서, 기타
- 임시거류증
 - 리투아니아 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임시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거류증은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 임시거류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임시거류증 신청서, 사진 1장(4.0 * 6.0),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리투아니아 내 임시주민등록 증명서, 수입원 확보 증명서류 또는 개인재산 증명서류 및 그 액수, 범죄경력증명서(영문, 아포스티유 필요), 보험증명서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출구(NOTHING TO DECLARE)를 통해 나오며, 바로 공항 대합실과 연결된다. 녹색 출구를 통해 나올 때 세관원이 짐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입국자의 수하물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원이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샘플 등을 카톤 박스에 담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관원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샘플도 가급적 일반 여행 가방에 넣는 것이 좋다. 한편, 세관에 신고할 물품(면세 반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1만 유로 이상 현금 보유)이 있다면, 붉은색 출구(ITEMS TO DECLARE)로 가게 돼 있고,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주류 (만 17세 이상)
 - 증류수: 알코올도수 22% 이상 1리터, 알코올도수 22% 미만 2리터
 - 포도주: 4리터
 - 맥주 : 16리터
- 담배 (만 17세 이상)
 - 궤련(cigarette): 200개비
 - 소형 엽궤련(cigarillo, 개당 3g 미만): 100개비
 - 엽궤련(cigar): 50개비
 - 기타 담배류: 250g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제기준)

- 상기 술, 담배, 향수, 의약품을 제외한 기타 기념품 등의 물품면세한도금액은 입국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 ? 비행기 또는 해로: 430유로(약 55만 원)
 - ? 육로: 300유로(약 38만 원)
- 단, 만 15세 미만인 경우 150유로(약 19만 원) 상당의 물품

○ 외국환신고

- 1만 유로 또는 1만 유로 상당의 외국환 반입의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

○ 의약품

- 여행자 개인 치료용 약품의 경우 제한 없음

○ 식품

- 동·식물성 식품 신고

○ 반입불허품목

- 미풍양속, 환경파괴 유해 물품
- 공공질서 혼란물품
- 동·식물
- 마약류 및 총기류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리투아니아 겸임)

전화번호	+48-22-559-2900~04
주소	Szwolcerw 6, 00-464 Warszaw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l-ko/index.do

〈자료원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리투아니아 행정부

전화번호	+370 7 066 3711
주소	Gedimino pr.11, LT-01103 Vilnius
홈페이지	http://lr.v.lt/

○ 재무부

전화번호	+370 5 239 0000
주소	Lukiki Str. 2, 01512 Vilnius
홈페이지	http://finmin.lrv.lt/

○ 외교부

전화번호	+370 5 236 2444
주소	J.Tumo-Vaiganto str. 2, LT-01511 Vilnius
홈페이지	http://www.urm.lt/

○ 내무부

전화번호	+370 5 271 7130
주소	Sventaragio str. 2, LT 01510 Vilnius
홈페이지	https://vrm.lrv.lt/

○ 이민국

전화번호	+370 85 271 7112
주소	L. Sapiegos 1, LT-10312 Vilniu
홈페이지	https://www.migracija.lt/

○ 경제혁신부

전화번호	+370 87 066 4845
주소	Gedimino pr. 38/2, LT-01104 Vilnius
홈페이지	http://eimin.lrv.lt/

○ 투자청

전화번호	+370 5 262 7438
주소	Jogailos g. 4, LT-01116 Vilnius
홈페이지	https://investlithuania.com/

○ 리투아니아 언론(ELTA)

전화번호	+370 6 825 5520
주소	Gynj g. 16
홈페이지	https://www.elta.lt/lt

○ 리투아니아 중앙방송

전화번호	+370 5 243 1058
주소	ekins g. 20, Vilnius
홈페이지	https://lnk.lt/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90 EURO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단품	5.57
2	식품	비빔밥	1인분	12.89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4.5
4	식품	신라면	1봉지	1.22
5	음료	커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2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330ml	1.11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30ml	1.47
8	의료	항생제	12정	7.79
9	교통	시내버스요금	1회권	1.11
10	교통	지하철요금	1회권	1.11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45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8.63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11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4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7.79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4.17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2.88
18	임금	최저임금	1달	685.18
19	학비	국제/사립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3학년 기준)	1년	16530.99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31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 유로존 국가로, 유럽연합 단일화폐인 유로를 사용한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 500유로가 사용되며, 동전은 1, 2, 5, 10, 20, 50센트, 1, 2유로가 사용되고 있다.
- 다만, 200유로와 500유로 지폐를 취급하는 상점은 극소수이므로 은행을 통해 단위를 바꿔가는 것이 좋다. 또한, 1, 2센트 동전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환전방법

- 환전은 은행, 시내의 환전소, 호텔 등에서 가능하나 환전 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 시내의 ATM 현금 인출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 대부분의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Amex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Visa, Master Card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용 시에는 한국과 같이 서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Pin 넘버(4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있는데, 사전에 카드회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오는 것이 좋다.
- NFC를 기반으로 하는 비접촉형식의 결제(contactless payment)가 가능하나 25유로까지 한도가 정해져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 빌뉴스의 대중교통은 버스, 트롤리 등이 있는데 한 종류의 승차권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환승이 가능한 시간제 승차권과 1회권이 있는데 시간제의 경우 30분 권 0.65유로, 60분 권 0.9유로이며 1회권은 1유로이다. 시간제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티켓 오픈 이후 구매한 각 티켓에 해당하는 30분, 60분 이내에 환승 제한이 없다. 또한, 체류 기간에 따라서 승차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1일권(24시간) 5유로, 3일권(72시간) 8유로, 10일권(240시간) 15유로 등이 있다.
- 대중교통 시간표는 관광청 홈페이지(www.stops.i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버스

- 빌뉴스의 버스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운행되는데 주간의 경우 배차시간이 짧고, 시내 곳곳을 운행하지만, 야간버스의 경우 배차

시간이 길고(30분 혹은 1시간 간격), 주요 지역만을 운행한다. 버스 기사에게 1유로를 내면 1회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후 승차권 확인 기계를 통해 탑승도장을 받아야 표가 활성화된다. 만약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표를 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에게 표를 구입할 경우 큰 단위의 지폐는 받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1유로 동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택시

-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출장자에게는 택시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콜택시 및 택시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에 따라 예약비로 1유로를 받는 경우가 있다. 기본요금은 1유로부터 시작한다. 이외에도 공유 차 어플리케이션인 ‘Uber’, 공항을 오가는 ‘Rideways’이 있다. 빌뉴스 공항에 있는 관광 정보 센터에서는 콜택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약비 없이 적정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콜택시 전화번호 : 1366, 1403(리투아니아 SIM 카드 삽입 후 사용가능), +370 5 231 0310, +370 5 240 0500 등
- 택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Uber, Rideways 등

다. 통신

핸드폰

- 출국 전 한국에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유심카드를 구입해 요금 충전 후 사용할 수도 있다. 리투아니아 내 휴대폰 서비스 통신업체는 ezys, labas, telia,가 대표적이며, 유럽에서 많이 이용되는 threesim과 vodafone은 판매하지 않는다.

인터넷(와이파이)

- 리투아니아 내 주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에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대부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호텔 대부분은 객실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레스토랑과 터미널 등지에서도 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라. 관광명소

○ 크로니안 모래톱(Curonian Spit)

도시명	Klaipeda
주소	Obwd Kaliningradzki, Rosja, 238535
명소소개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두 국가에 걸쳐져 있는 모래톱이다. 클라이페다에서 52km이르는 지역은 리투아니아에, 삼비아 반도에 이르는 나머지 46km는 러시아에 속해있다.200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비고	https://whc.unesco.org/en/list/994/

○ 빌뉴스 역사지구(Vilnius Historic Centre)

도시명	Vilnius
주소	Stare Miasto w Wilnie, Wilno, Litwa
명소소개	유럽 북동부의 국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위치한 세계유산이다. 중세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날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 궁전 등의 중세 건축물이 도시 곳곳에서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94년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비고	https://whc.unesco.org/en/list/541/

○ 커네바고대지구(Kernav Archaeological Site)

도시명	Vilnius 근교
주소	Kerniaus g. 4A, Kernav 19172, Litwa
운영시간	11~3월: (화-토)10~16시 4월 ~10월: (수-일)10~18시
휴무일	11~3월: 월, 일요일, 국가공휴일 4~10월: 월, 화요일, 국가공휴일
명소소개	유럽 북동부의 국가 리투아니아의 고고유적지이다. 구석기 시대에서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유적, 유물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과거 인류 주거의 형태와 중세 도시의 모습과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여겨진다. 2004년 유네스코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www.kernave.org/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무료입장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마. 식당

- 현지식당

○ 키친(Kitchen)

도시명	Vilnius
전화번호	+370 688 80558
주소	Didioji g. 11, Vilnius 01128, Litwa
가격	스타터 약 5유로 메인코스 약 10유로 디저트 약 4유로
영업시간	11시 30분~00시(자정)
비고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itchenvilnius

◦ 스티클리아리 레스토랑(Stikliai Restaurant)

도시명	Vilnius
전화번호	+370 5 264 9580
주소	Gaono g. 7, Vilnius 01131, Litwa
가격	코스요리 일인당 85유로 스타터 약 20유로 메인코스 약 40유로 디저트 약 15유로
영업시간	화~토요일 18~23시
휴무일	월, 일요일
비고	홈페이지: https://www.stikliai.com/en/restaurants-events/

◦ 슈가모아(Sugamour)

도시명	Vilnius
전화번호	+370 686 19995
주소	Vokiei g. 11, Vilnius 01130, Litwa
영업시간	화~토요일 7시 30분 - 00시(자정) 월, 일요일 7시 30분 - 23시
휴무일	월, 일요일
비고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ugamourboutique/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한국식당

◦ 아라리요(Ararijo)

도시명	Vilnius
전화번호	+370 605 87953
주소	Bokto g. 3, Vilnius 01126, Litwa
가격	떡볶이 6.90유로 비빔밥 8.50유로
영업시간	화,수,목 16~22시 금,토,일 13~22시
휴무일	매주 월요일

◦ 맛(Restoranas KOREAN TASTE)

도시명	Vilnius
전화번호	+370 659 26909
주소	Vokiei g. 2, Vilnius 01130, Litwa
가격	김치찌개 11.01유로 비빔밥 11.01유로
영업시간	월,화,수,목,일요일 : 11~23시 금, 토요일: 11~00시(자정)
비고	홈페이지: http://koreantaste.lt/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노보텔 빌뉴스 센터(Hotel Novotel Vilnius Centre)

도시명	Vilnius
주소	Gedimino pr. 16, Vilnius 01103, Litwa
전화번호	+370 5 266 6200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5209/index.en.shtml
숙박료	더블룸 약 8만원
소개	올드타운 근처에 위치

○ 빌뉴스 시티 호텔(VILNIUS CITY HOTEL)

도시명	Vilnius
주소	vitrigailos g. 11D, Vilnius 03228, Litwa
전화번호	+370 689 87777
홈페이지	https://www.vilnius-hotel.lt/
숙박료	더블룸 약 7만원

○ 래디슨 블루 호텔 리에투바(Radisson Blu Hotel Lietuva)

도시명	Vilnius
주소	Konstitucijos pr. 20, Vilnius 09308, Litwa
전화번호	+370 5 272 6272

홈페이지	https://www.radissonhotels.com/en-us/
숙박료	더블룸 약 9만원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게스트하우스

○ 올드타운 트리오(Old Town Trio)

도시명	Vilnius
주소	Raugyklos g. 15A, Vilnius 01140, Litwa
전화번호	+370 5 216 1696
홈페이지	https://oldtown3.lt/
숙박료	더블룸 약 5만원

○ 빌뉴스 홈 비앤비(Vilnius Home B&B)

도시명	Vilnius
주소	Pylimo g. 14B, Vilnius 01117, Litwa
전화번호	+370 662 99322
홈페이지	http://www.vilniushome.eu/
숙박료	더블룸 약 5만원
소개	올드타운 근처에 위치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 러시아나 폴란드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로 안전한 편이나 야간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 외국인 유입이 적고, 소매치기나 집시가 거의 없다.
- 다만, 빌니우스 시내 관광지, 기차역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 여행객 대상 소매치기 사건이 가끔 발생하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 긴급전화
 - 화재: 01

- 경찰: 02
- 구급차: 03
- (화재, 사고, 경찰, 구급차): 112(우리나라 119와 같음)
- 전화안내: 118

○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비상연락처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48-22-559-2900~04
- 긴급 연락처(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48-887-46-060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월 주택 임차료는 주택의 위치, 크기, 시설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리투아니아 부동산 기업인 OBER HAUS 자체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빌뉴스에서는 신축 투룸의 경우 월 임대료는 260유로에서 600유로가량이며, 고급 주택가는 월 임대료는 800유로에서 1,200유로 가량이다. 현재 리투아니아 전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 관리비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침대, 냉장고, 소파, 책장, 전자레인지, TV, 청소기 등을 포함해 주택을 임차하는 '퍼니쉬드'가 일반화된 추세이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인 쌍방이 사전에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모델, 가격, 용량 등)을 협의해서 구입해야 하므로 최종 입주 시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 임차할 경우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기간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임차 기간 중 중도 해약 시에는 1개월 전에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보증금으로는 1개월 임차료를 선금으로 소유주에게 납부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된다.

전화

◦ 리투아니아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동전화 사용을 원할 경우 이동전화 사업자의 본 지점을 방문해 이동전화기와 SIM 카드 및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구입한 선불카드 금액만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선불카드 서비스는 ezy, labas, telia 등이 다. 유심카드는 전자제품 마트, 통신사 지점, 대형슈퍼 및 길거리 키오스크에서 구입 가능하다.

전압/플러그

◦ 리투아니아 콘센트는 Type F가 일반적이며,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Type C 및 Type E와 혼용 가능하다.

◦ 전압은 220V로 대부분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헤르츠는 한국과 달리 50Hz로 모터 작동 제품은 장시간 이용 시 고장이 날 수 있다.

식수

◦ 리투아니아는 토양에 석회질이 많고 수도관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일반적으로 수도물을 음용하지 않고 생수를 구입해서 마신다.

◦ Norvil, neptunas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탄산수(Carbonated, Gazuotas)와 생수(Negazuotas)를 구분해서 팔고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 리투아니아 내 다수의 브랜드 딜러샵이 존재하여 쉽게 방문 및 구매를 할 수 있다. 차량 보험료는 종합 보험인 경우 차종에 따라 연간 100~400유로 정도이다. 많이 사용하는 보험으로는 Compensa, CASCO 등이 있다.

운전면허 취득

○ 한국-리투아니아 간 운전면허 상호 승인 조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 조약에 따르면 일국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방 체약 당사자의 영역 안에 정착하는 경우, 그자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거주국의 국내 운전면허와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단, 운전면허의 번역은 요구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일명 제네바 협정) 가입국으로서 국제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리투아니아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할 경우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185일 이상 체류할 경우 “Regitra”에서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운전할 수 있다.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는 통용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주의할 점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큼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해외 근무 기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재발급 절차를 밟아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진
 - 여권
 - 체류비자 또는 거주증
 - 건강증명서
 - 한국 운전면허증
 - 한글 공증번역본 (리투아니아어)
- 발급 수수료(신청발급 처리기간에 따라 다름)
 - 1일: 37.38유로
 - 3일: 22.88유로
 - 10일: 14.19유로
 - 10일: 20.27유로 (우편신청)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Swedbank Lithuania: 1820년 개설된 스웨덴계 종합 금융기관으로 리투아니아 금융계에서 선두를 차지
- BIGBANK: 2015년 개설된 종합 금융기관
- Luminor AB: 2017년 개설된 종합 금융기관으로 Nordea Bank와 DNB Bank가 합병하여 개설
- SEB Banka: 1856년에 개설된 스웨덴계 종합 금융기관
- AB Siauliu Banka: 1992년 개설된 종합 금융기관
- BPH: 1989년 개설된 종합 금융기관

계좌 개설방법

○ 계좌 개설 서비스는 은행 대부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리투아니아 내 거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불카드(payment car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불액

수는 카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신용카드와 대출서비스는 리투아니아 내에서의 평균수입에 따라 좌우된다. 예약하거나 번호표를 뽑아 대기한 후 준비한 여권과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인터넷 뱅킹을 개설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우편 배송, 직접 수령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Vilnius (AISV)

도시명	Vilnius
커리큘럼	Pre-Kindergarten - age 2~4 Kindergarten - Grade 5 Grades 6~8 Grades 9~10 Grades 11~12
학비	- Registration Fee : 350 EUR - Annual Tuition Fee Pre-Kindergarten - age 2~4 : 6,854 EUR Kindergarten - Grade 5 : 14,874 EUR Grades 6~8 : 16,160 EUR Grades 9~10 : 17,397 EUR Grades 11~12 : 17,960 EUR
홈페이지	https://www.aisv.lt/

◦ British School of Vilnius (BSV)

도시명	Vilnius
커리큘럼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학비	- Application Fee: 100 EUR - Enrolment Fee: 1,000 EUR - Yearly Fee Pre-Nursery: 7,800 EUR Nursery: 13,200 EUR Reception: 14,700 EUR Year One: 16,200 EUR Year Two: 16,200 EUR Year Three: 16,200 EUR Year Four: 16,200 EUR Year Five: 16,200 EUR Year Six: 16,200 EUR
홈페이지	https://britishschool.lt/

○ Vilnius International School (VIS)

도시명	Vilnius
커리큘럼	Early Childhood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11th and 12th grades
학비	- Application fee: 50 EUR - Admission fee: 400 EUR - Annual tuition fee - Early Childhood: 7,740 EUR - Primary School: 8,190 EUR - Middle School: 8,190 EUR - 11th and 12th grades: 9,000 EUR
홈페이지	https://www.vischool.lt/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현지학교

○ Kolegium Jezuitw w Wilnie

도시명	Vilnius
홈페이지	https://www.vjg.lt/

○ Vilnius Minties Gymnasium

도시명	Vilnius
홈페이지	http://www.minties.vilnius.lm.lt/

○ Vilnius Lyceum

도시명	Vilnius
홈페이지	https://licejus.lt/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마. 병원

○ Baltic Amerika Clinic

도시명	Vilnius
주소	Nemenins pl. 54A, Vilnius 10104, Litwa

전화번호	+370 5 234 2020
진료과목	건강검진,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고	홈페이지: https://www.bak.lt/

◦ Medicinos Diagnostikos centras

도시명	Vilnius
주소	V. Grybo g. 32A, Vilnius 10318, Litwa
전화번호	+370 5 233 3000
진료과목	건강검진, 종합병원, 수술
비고	홈페이지: https://www.medcentras.lt/

◦ Krajowy szpital uniwersytetu wileskiego

도시명	Vilnius
주소	iltnami g. 29, Vilnius 04130, Litwa
전화번호	+370 5 216 9069
진료과목	종합병원, 건강검진,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비고	홈페이지: http://www.rvul.lt/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Prekybos centras CUP

도시명	Vilnius
주소	Ups g. 9, Vilnius 09308, Litwa01103, Litwa
홈페이지	https://cupvilnius.lt/

◦ EUROPA

도시명	Vilnius
주소	Konstitucijos pr. 7A, Vilnius 09307, Litwa
홈페이지	https://pceuropa.lt/

◦ G09

도시명	Vilnius
주소	Gedimino pr. 9, Vilnius 01103, Litwa
홈페이지	http://go9.lt/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 Lidl

도시명	Vilnius
주소	emaits g. 16, Vilnius 03201, Litwa
취급 식료품	채소, 육류, 과자류, 커피, 반조리식품, 디저트류 등
비고	도시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홈페이지: https://www.lidl.lt/ 운영시간: 7~23시

◦ MAXIMA

도시명	Vilnius
주소	Panevio g. 2, Vilnius 02111, Litwa
취급 식료품	채소, 육류, 과자류, 커피, 반조리식품, 디저트류 등
비고	도시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홈페이지: https://www.maxima.lt/ 운영시간: 8~22시(지점마다 다름)

◦ IKI

도시명	Vilnius
주소	Jogailos g. 12, Vilnius 01116, Litwa
취급 식료품	채소, 육류, 과자류, 커피, 반조리식품, 디저트류 등
비고	도시 전역에 체인점이 있음. 홈페이지: https://www.iki.lt/ 운영시간: 7~23시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피플 피트니스 파노라마

도시명	Vilnius
-----	---------

주소	9, Saltoniki g., Vilnius 08105, Litwa
홈페이지	https://peoplefitness.eu/lv/
소개	피트니스 센터

○ 유로포스 센트로 골프 클럽

도시명	Vilnius
주소	Golfo st. 24, Girija Village, LT-15130 Vilnius district
홈페이지	http://www.golfclub.lt/
소개	골프클럽

○ 파비요니슈케스 스위밍풀

도시명	Vilnius
주소	S. Nries g. 45, Vilnius 06305, Litwa
홈페이지	https://www.fabijoniskiubaseinas.lt/
소개	수영장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Naujj met diena
국가 재정의 날	2021-02-16	Lietuvos valstybs atkrimo diena
독립기념일	2021-03-11	Lietuvos nepriklausomybs atkrimo diena
부활절	2021-04-04	Velykos
부활절 월요일	2021-04-05	Antroji Velyk diena
노동절	2021-05-01	Tarptautin darbo diena
어머니의 날	2021-05-02	Motinos diena
아버지의 날	2021-06-06	Tvo diena
성 요한의 날	2021-06-24	Rasos ir Jonini diena
민다우가스 왕 대관 기념일	2021-07-06	Valstybs (Lietuvos karaliaus Mindaugo karnavimo) ir Tautikos giesms diena
성모승천 대축일	2021-08-15	olin (v. Mergels Marijos mimo dang diena)

만성절	2021-11-01	Vis ventj diena
위령의 날	2021-11-02	Mirusij atminimo (Vlini) diena
성탄절 전날	2021-12-24	v. Kios
성탄절	2021-12-25	v. Kaldos
성탄절 다음날	2021-12-26	v. Kaldos

<자료원 : <https://www.officeholidays.com/countries/lithuania/2021>>

9. KOTRA 무역관 안내

바르샤바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1Fl. Warsaw Financial Center ul. Emilii Plater 53, 00-113 Warszawa, Poland
- 전화: +48-22-520-6230
- 팩스: +48-22-520-6231
- 이메일: biuro@kotra.pl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warsaw/>

공항-무역관 이동

- 바르샤바 쇼팽 공항 기준, 175번 버스를 이용하면 무역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바르샤바 중앙역 앞에 도착한다. Emilii Plater 길을 따라 오른쪽에 문화과학궁전을 두고 걸어 올라오면, InterContinental 호텔을 지나 무역관이 위치한 Warsaw Financial Center 건물을 찾을 수 있다. 버스 이용 시 SINGLE-FARE TRANSFER TICKET(4.4즈워티)을 공항의 버스정류장 티켓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승차 후 승차권 기계를 통해 스탬프를 찍어야 한다.
- 택시 이용 시 공항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하면 되고, 무역관 주소인 Emilii Plater 53 또는 무역관 건물 Warsaw Financial Center를 기사에게 알려주면 된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요금은 40~50즈워티(약 12,000~15,000원) 정도이다.
- 무역관 소재 건물인 Warsaw Financial Center에 도착 후 로비에서 방문처를 밝히면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